



학 교 헌 장

포천노곡초등학교

포천노곡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고운 마음, 밝은 지혜, 바른 꿈을 심어주고, 학부모에게는 신뢰받는 해피노곡교육을 실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교류하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4년 설립된 학교이다.

미래의 꿈을 키우는 해피노곡교육을 이루기 위하여 학교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특색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학교 헌장을 제정·운영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설립목적】 포천노곡초등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가 추구해 나갈 목표를 제시함과 아울러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어울림이 행복한 해피 노곡」을 만들어 학생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표】 본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교육목표로 한다.

- ① 사람과의 어울림
- ② 자연과의 어울림
- ③ 문화와의 어울림
- ④ 스마트와의 어울림

제3조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본교는 교육부가 고시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즐거운 배움 속에 나눔을 실천하며 자신의 꿈을 창의롭게 키우는 노곡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① 배움 중심의 창의지성 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모든 어린이가 학습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배움 속에서 기본적인 학습능력과 탐구능력을 익히고 종합적인 문제해결력 및 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방법, 학습형태, 시간운영, 평가 체제를 맞춤형으로 재구성하여 실시한다.

- 1)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2) 체험중심 주제 통합학습, 자유탐구학습, 문화예술 집중학습, 프로젝트형 체험학습, 교과 연계 독서활동, 소집단 토론학습,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법을 혁신한다.
- 3) 학습과정 중심의 상시평가 실시로 배움과 과정 중심의 평가혁신 및 배움성장 알리미를 통한 가정통지로 학부모와 연계하여 학생의 학습과정 환류한다.

② 나눔을 배우고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 함양

다양하고 활동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배려와 나눔의 생활 실천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며 다양한 성장과 잠재력이 존중되는 즐거운 교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③ 공감 문화를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활발한 학교 문화를 만들고 학생 자치활동 다모임과 학생 중심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생 자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학교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문화 중심으로서 학교 문화를 만든다.

제 2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제 :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적용 단계에 따라 1~2학년과 3~6학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3~6학년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3) 5~6학년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교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편성한다.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한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운영한다.

② 교육과정 시간 운영 계획

1) 연간 수업 일수 : 연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 1항에 의거 학교 운영 위원회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2) 학기의 시작과 종료 :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종료일까지를 1학기, 여름개학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를 2학기로 한다.

3) 교과지도의 주간 및 일일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시간을 연속하여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교육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수업일수와 교육 과정 배당 기준 수간에 생기는 학교 재량 융통성 일은 학교 행사일로 하고 그 외의 학교 행사는 교과와 관련지어 운영한다.

③ 시간 편성

1)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은 34주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2) 1시간 단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및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과정 중심의 학력신장』을 위한 활동 시간의 수업 시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운영 지침이나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자율학교 운영 지침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4) 주간 및 1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 간에 균형을 이루어지도록 한다.

5)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특성에 따라 시간을 고정 또는 연속 운영하거나, 두 교과 이상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

④ 학교 교육과정 운영

- 1)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별로 성격, 목표, 방법, 평가로 편성·운영한다.
- 2) 재량 활동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제시와 월·주별 지도 순서에 따라 제재, 차시, 내용, 시간, 장소, 지도방법 순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편성, 운영한다.
- 3) 학생의 발달단계, 개성과 능력,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요구 등에 관한 각종 기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 운영한다.
- 4) 교육과정 시간운영의 연간, 월간, 주간, 1일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5) 자율활동은 역할분담활동, 학급 및 전교 협의활동, 기본 생활습관 형성 활동, 친교활동 클럽활동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 6) 획일적 수업을 지양하고 실험, 관찰, 조사, 수집, 조작, 견학 등 직접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며, 교과별 영역에 따른 교수·학습 모형의 적용을 통한 다양한 학습 형태를 적용한다.
- 7) 특별실(과학실, 컴퓨터실) 및 운동장 사용시간은 별도 계획에 의거 운영한다.
- 8)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 힘쓴다.
- 9) 학년별 개인별 성취 수준 목표를 설정하여 학업 성취도를 평가해 나가는 체제로 전환한다.
- 10) 학교 교육과정 자체평가를 연2회 실시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제5조 【교과서】

- ① 교육부 검·인정교과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새 교과서를 자체 제작할 때는 교과별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교육여건

제6조 【교원】

- ① 교과 지도와 학생지도에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확보한다.
- ② 외국어 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영역의 전문 강사 및 외부 전문가를 자원 교수활동에 활용하거나 보조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혁신학교 기준에 의하여 유지한다.

제7조 【시설설비】

- ① 교육 기본시설 : 학교 시설 및 설비 및 교육기자재 학교 시설 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수준에 준한다.
 - 일반교실, 보건실, 영어실, 자료실, 과학실, 컴퓨터실 등
 - 교육기자재 : 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도서, 시청각 자료, 학습준비물, 교재교구를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 우선 확보한다.
- ② 특수 활동 시설 : 문화, 예술, 생태 체험교육 등 본교의 특성화 교육과정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의 미비한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도서실, 돌봄교실, 체육관 등)
- ③ 교육활동 지원시설 : 교원의 연구풍토 조성 및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

시설 중심으로 지원 환경을 구축한다.

■ 교육연구실 : 교사연구실, 회의실, 연구 자료실을 겸용 운영한다.

- ④ 학교 바깥 시설의 이용 : 본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학교 인근의 각종 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4 장 학사관리

제8조 【학생선발】 신입생, 전입생 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입학생 전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학교 학구내 아동으로서 읍·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도농교류 및 농촌유학 등 체험학습을 위한 교환학생의 정원 외 전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학생 정원 관리】

- ① 학급당 학생 정원 및 학생 전학·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관리 지침 및 혁신학교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10조 【학년도, 수업연한】

- 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학년도 및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한다.
- ② 연간 수업일수의 2/3 이상의 이수한 경우 상급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제11조 【과정수료의 기준】

- ① 교육부가 규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국민공통기본과정 6학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기간 중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은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장 학교운영

제1절 인사 및 학교 공동체 관리

제12조 【교장】

- ①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덕망이 높고 풍부한 행정 경험과 뚜렷한 교육철학이 있으며 학교 경영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 ② 학교장은 본교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육활동 지원체제 및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 【교직원】

- ① 교원 인사는 경기도 초등교원인사관리 기준 및 포천교육지원청 초등교원인사 기준에 의한다.
- ② 학교장은 자율학교의 운영과 학생지도에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교사 정원의 50%까지 초빙 할 수 있다.
- ③ 교사의 학년 전문성 및 교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제14조 【교직원 전문성 신장】

- ① 본교 교원은 학교 특성에 따른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과 연수에 성실히 참여한다.
- ② 본교 교사는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방적인 수업 연구 풍토와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교사, 학부모 대상 수업 공개, 자기장학, 동료장학, 초청장학 등에 힘써야 한다.
- ③ 학교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대외 연수 및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 ④ 학교 개혁을 공유하는 학교 간 또는 단체 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의 공유와 연대활동을 지원한다.

제15조 【학습 공동체 형성】

- ① 모든 학생은 인격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학교 구성원은 동등한 위치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 ② 가정 학습 환경이 어렵거나,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을 고려한 학습과제, 학습준비물, 각종 대회 준비 등을 통해 출발부터 고른 학습 조건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체벌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체 생활에 위대한 활동을 하거나 학교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 학칙의 절차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④ 모든 학생은 바른 학습 습관과 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공동체적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한다.

제16조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력】

- ①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의 참여를 높인다.
- ②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여러 사업을 전개한다.
- ③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지역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

제17조 【대외협력】

- ① 학교발전에 관한 자문을 위해 대학, 각종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 체제를 갖춘다.

제2절 재정·시설 관리 및 운영

제18조 【학교회계】

- ① 학교 예산의 편성은 경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 ② 학교발전기금의 모금과 집행은 정당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제19조 【재정운영의 공정성】

- ① 학교발전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결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학교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해야 한다.
- ② 예산 수립 및 집행과정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운용에 있어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③ 예산의 편성에 있어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와 학생복지 지원비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제20조 【교수·학습 활동 지원】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①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등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잡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해야 한다.
- ②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 중심으로 업무조직을 편성해야하고 교육·행정 업무 지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 ③ 교사간의 상호협조, 교육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상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와 협의를 위한 공간과 연구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시설 안전 관리】

- ① 학교 시설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장한다.
- ② 학교의 모든 시설 환경은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과 학생의 복지를 위한 교육적 공간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제 6 장 후생복지·지원

제22조 【학생 장학금】

- ① 본교의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학교 공동체를 위해 협동·봉사하는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학교생활 우수 학생을 수혜자로 한다.
- ② 장학금 재원은 학교발전기금, 개인 또는 단체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③ 장학생의 자격, 선발시기,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등 장학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3조 【학생 특별활동】

- ① 학생들의 소질계발 및 취미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 ② 자율적인 학교생활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학생자치 활동과 봉사활동을 활성화 한다.
- ③ 학교단위의 각종 예능발표회, 축제, 캠프, 체육행사 활동을 통해 자유표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한다.
- ④ 환경보존운동, 수련·교류 활동,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 의식과 봉사 정신을 함양한다.

제24조 【학생 진로 및 상담】

- ① 재학 중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의 자료로 활용한다.
- ②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 ③ 외래기관의 인사를 초빙하여 진로선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7 장 학교평가위원회

제25조 【목적 및 구성】

- ①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외부 전문가 지원을 받아 매년 학교의 질적 평가를 통해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평가위원회'를 두고 학교구성원(교직원, 학부모, 학생)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26조 【활동내용】

- ① 학교교육과정과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평가하고, 관련되는 학교운영 전반적인 것을 평가한다.
- ② 평가 관련한 수업이나 교육활동 참관,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전개한다.

제27조 【결과의 활용】

- ① 평가 결과를 학교, 학년 계획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자료를 누적, 보관한다.

제 8 장 보 칙

제28조 【학교 발전계획】

지속적인 학교 발전을 위하여 미래의 비전, 발전 전략에 관한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며 교사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육 과정 운영, 학교 재정 확충 및 교육 시설의 현대화 등 제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29조 【학교헌장의 변경】

본 헌장의 제정과 개정으로 학교헌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포하며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0조 【지정 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혁신학교 운영이 해제되는 경우 학교실정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일반 학교로 전환하거나 재학생들에 대한 시범운영 계속 또는 다른 학교로 전학 허용 등으로 재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공표·시행】

이 헌장은 2022년 3월에 제정, 공포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